

거래사실 확인신청서(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-

1. 신청인 인적사항

① 상호(법인명)		② 사업자등록번호	
③ 성명(대표자명)		④ 전화번호	
⑤ 사업장소재지			
사업의 종류	⑥ 업태		⑦ 종목

2. 공급자 인적사항

⑧ 상호(법인명)		⑨ 사업자등록번호	
⑩ 성명(대표자명)		⑪ 전 화 번 호	
⑫ 사업장소재지			

3. 신청 내용

⑬ 공급대가		⑭ 공급가액		⑮ 부가가치세	
--------	--	--------	--	---------	--

4. 거래내역 명세서

NO	⑯ 거래일	⑰ 거래품목	⑱ 규격	⑲ 수량	⑳ 공급대가 (부가가치세포함)	㉑ 비고 (대금결제방법)
	합계					

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71조의2제3항에 따라 거래사
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 무 서 장 귀하

첨부서류	1.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(필수) 2.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
------	--

작성 방법

1.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**1년 이내에**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.
 2. 공급자 인적사항(⑧ ~ ⑫)
 - 가.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.
 - 나. ⑧, ⑪,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.
 - 다.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 - 라. 거래 당시 미등록자, 휴업자·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3. 신청 내용(⑬ ~ ⑮)
 - 가. 공급대가(⑬)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,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**5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.**
 - *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 - 나. 공급가액(⑭)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 - 다. 부가가치세액(⑮)은 공급가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* 부가가치세액(⑮) = **공급가액(⑭)** (공급대가 ÷ 1.1) × 10 %
 4. 거래내역 명세서(⑯ ~ ㉑)
 - 가.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.
 - 나. 공급대가(㉑)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(⑬)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
 - 다. 비고(㉒)란에는 대금결제방법을 적습니다.
- ※ 구비서류
- 가.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(간이세금계산서, 거래명세서 등)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(대금결제)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나.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.